순천시의회 공고 제2016-20호

「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8월 22일

순 천 시 의 회 의 장

#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 1. 제정취지

○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

○ 상위법인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 함

## 2. 주요내용

○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조정

• 순천시의회 의원 1명 ⇒ 순천시의회 의원 2명

○ 순천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업 조항 삭제

## 3. 입법예고 기간 : 2016. 8. 22. ~ 2016. 8. 26. (5일간)

## 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6일까지 순천시의회(순천시의회의장)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061-749-4958, 팩스 061-749-4773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 · 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붙임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안 번호 | 제2392호 |
|---|---|

○ 발의연월일 : 2016. 08. 22.
○ 발 의 자 : 허유인 의원

## 1. 개정이유

○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

○ 상위법인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 함

## 2. 주요내용

○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조정
- 순천시의회 의원 1명 ⇒ **순천시의회 의원 2명**

○ 순천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업 조항 삭제

## 3. 개정조례안 : 별 첨

## 4. 관련법령 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## 5. 예산상황 : 해당없음

#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14조제3항제2호가목**을 “순천시의회 의원 1명”에서 “순천시의회 의원 2명”으로 한다.

**제5장을 제4장으로, 제23조부터 제25조를 제21조부터 제23조로 하고, 제4장 및 제21조, 제22조를 삭제한다.**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14조(구성) ①~② (생략)<br>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br>1. (생략)<br>2. 위촉직 위원<br>가. 순천시의회 의원 1명<br>나.~라. (생략) | 제14조(구성) ①~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br>1. (현행과 같음)<br>2. 위촉직 위원<br>가. **순천시의회 의원 2명**<br>나.~라. (현행과 같음) |
| 제4장 순천정원지원센터 | **(삭제)** |
| 제21조 (생략) | **(삭제)** |
| 제22조 (생략) | **(삭제)** |
| 제5장 보칙 | **제4장** 보칙 |
| 제23조 (생략) | **제21조** (현행 제23조와 같음) |
| 제24조 (생략) | **제22조** (현행 제24조와 같음) |
| 제25조 (생략) | **제23조** (현행 제25조와 같음) |